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3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3 조의 2 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(사용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. 이 조에서 이하 같다.)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%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증 가 율	대 부 료 인 상 율
10%이상 20%미만	10% + (증가율 - 10%) × 0.3
20%이상 50%미만	13% + (증가율 - 20%) × 0.1
50%이상 100%미만	16% + (증가율 - 50%) × 0.06
100%이상 200%미만	19% + (증가율 - 100%) × 0.03
200%이상 500%미만	22% + (증가율 - 200%) × 0.01
500%이상	25% + (증가율 - 500%) × 0.005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(사용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.)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(신 설)	제 23 조의 2 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(사용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. 이 조에서 이하 같다.)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%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은 제2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증 가 율	대 부 료 인 상 율
10%이상 20%미만	10%+(증가율- 10%)×0.3
20%이상 50%미만	13%+(증가율- 20%)×0.1
50%이상 100%미만	16%+(증가율- 50%)×0.06
100%이상 200%미만	19%+(증가율-100%)×0.03
200%이상 500%미만	22%+(증가율-200%)×0.01
500%이상	25%+(증가율-500%)×0.005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대한 적용례)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(사용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.)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.